

문제1 정답 ㉓

필요경비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업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만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 추후 해당 자산이 처분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문제2 정답 ㉓

장기할부매출시 처리방법

①원칙: 명목가액 + 인도기준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원	(대) 매출	40백만원
------------	-------	--------	-------

②예외: 현재가치금액+인도기준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원	(대) 매출	36백만원
		현재가치할인차금	4백만원

③예외: 회수기일도래기준(계약상 회수예정액을 의미)

(차) 현금	14백만원	(대) 매출	12백만원
		선수금	2백만원

※참고

문제3 정답 ④

- 대손충당금 한도액=설정대상채권×Max[1%, 대손실적률]
- 대손실적률=2천만원/10억원(4기말 채권잔액)=2%
- 대손충당금 한도액=12억×2%=24,000,000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50,000,000(대손충당금 기말잔액)-24,000,000(한도액)=26,000,000
(한도초과액)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1010

2016 김충신 세법(2) P. 240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계산형 내용 참조)

문제4 정답 ②

원천징수대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원천징수대상)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단,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은 제외)

퇴직소득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460

2016 김충신 세법(2) P. 563

문제5 정답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816

2016 김충신 세법(2) P. 7

문제6 정답 ②

- 처분자산에 대한 부인액 조정

:2,500,000(부인액)×3,000,000/15,000,000=500,000(△유보)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단, 감가상각자산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양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한다.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991

2016 김충신 세법(2) P. 212

문제7 정답 ②

- ① 법인세의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7년**
- ② 제척기간의 기산일
 - ㉠ 신고하는 국세: 신고기한의 다음날
 - ㉡ 고지하는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③ 소멸시효의 기산일
 - ㉠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 ㉡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국세(무신고포함):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모든 국세에 대한 의무가 소멸됨**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88~90

2016 김충신 세법(1) P. 65~67

문제8 정답 ②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등(**4월22일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이나 사실확인본은 매입세액공제가능**)
- ③ 사업무관
-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4월18일 승용자동차매입관련**)
- ⑤ 접대비관련 매입세액(**5월12일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⑥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⑦ 토지관련 매입세액(**6월10일 공장부지조성 매입세액**)
- ⑧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참고

문제9 정답 ①

사업장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590

2016 김충신 세법(1) P. 299

문제10 정답 ④

※추정상속재산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이상의 재산처분액,채무부담액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이상의 재산처분액,채무부담액

※사전증여재산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1268

2016 김충신 세법(1) P. 519

문제11 정답 ④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단,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43

2016 김충신 세법(1) P. 25

문제12 정답 ㉓

※익금항목(유보로 처분)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세무조정)

(익금산입) 유가증권 500만원 (유보)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43

2016 김충신 세법(2) P. 52

문제13 정답 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중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14 정답 ㉒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15 정답 ㉒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에 해당한다.

문제16 정답 ㉔

미등기 자산의 불이익

- ① 양도소득 기본공제 미적용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③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미적용

문제17 정답 ㉒

※실질과세의 원칙

①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66

2016 김충신 세법(1) P. 43

문제18 정답 ①

-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674

2016 김충신 세법(1) P. 400

문제19 정답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를 말한다.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815

2016 김충신 세법(2) P. 4

문제20 정답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등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참고

2015 박창한 세법 P.1198

2016 김충신 세법(2) P. 252